#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허종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82 발의연월일: 2024. 6. 28.

발 의 자:허종식·윤준병·김교흥

어기구 · 강준현 · 문대림

유동수 · 박홍배 · 이연희

정일영 · 노종면 의원

(119]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.

그러나 실태조사의 실시가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이고 그 주기 또한 불명확하여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. 이와 비교하여, 정부의 실태조사 관련 법적 근거를 규정 한 다른 법률에서는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두고 주기를 명시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실태조사를 매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 도록 하고,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통계 작성 ·관리 공표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제1항 중 "할 수 있다"를 "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지방자 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통계를 작성·관리하고 공표하여 야 하며,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.
-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·관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15조의2(지역사랑상품권 이용  | 제15조의2(지역사랑상품권 이용     |  |  |
| 실태조사) ① 행정안전부장관    | 실태조사) ①               |  |  |
| 은 효율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의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사를 <u>할 수 있다</u> . |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 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|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       |  |  |
| <u>&lt;신 설&gt;</u> |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|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|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 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| 권에 관한 통계를 작성・관리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| 하고 공표하여야 하며, 필요한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|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| <u>다.</u>             |  |  |
| <u>②</u> (생 략)     | 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 |  |  |
| <u>&lt;신 설&gt;</u> |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| 조사와 제2항에 따른 통계 작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| 성・관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|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| <u>정한다.</u>           |  |  |